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K-콘텐츠 통합기반시설 지정 등 〉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03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K-콘텐츠 통합기반시설 지정 등	3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미애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5. 7. 7.

다. 회 부 일 : 2025. 7.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문화 관련 법률에는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의 진흥의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개별 시설이나 사업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집적된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하여 공연·관광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하고 통합기반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유통·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5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K-콘텐츠 통합기반시설 지정 등(안 제17조의2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 거점의 K-콘텐츠 복합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연장, 창작 스튜디오, 디지털 영상시설, 가상현실·증강현실 체험관 등을 포함한 통합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7조의2(K-콘텐츠 통합기반시설의 지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 거점의 <u>K-콘텐츠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연장, 창작 스튜디오, 디지털 영상시설, 가상현실·증강현실 체험관 등을 포함하는 통합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u>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을 비롯한 문화관련 법에서 문화산업 및 콘텐츠 산업의

진흥 지원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개별 시설이나 사업 단위로 분산되어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집적된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연장, 창작 스튜디오, 디지털 영상시설, 가상현실·증강현실 체험관 등을 포함하는 통합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K-콘텐츠 통합기반시설’은 영상, 공연, 디지털 콘텐츠 등 한국문화산업을 한 곳에서 체험, 생산, 소비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이해되는 바, 이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¹⁾ 상의 ‘문화산업진흥시설’²⁾의 유사개념 또는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문화산업을 국가의 주요 전략사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문화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화산업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기본법으로, 문화산업과 관련된 창업과 제작 지원,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문화산업단지 조성,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어, 동 법의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제도를 통해 ‘K-콘텐츠 통합기반시설’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³⁾

문 의 처
02)6788-5376

-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17. “문화산업진흥시설”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 제21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④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을 문화산업진흥시설로 활용하게 하거나 그 건축물에 지원시설의 입주를 권장할 수 있다.
- ②정부는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는 콘텐츠 기업-교육-기관 등이 집적된 콘텐츠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콘텐츠의 제작과 생산, 기술·연구 등 산업의 측면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금형 콘텐츠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공연장 및 가상·증강현실 체험관 등 제작·향유 중심의 K-콘텐츠 통합 기반시설과 그 목적이 다르며, 또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는 기본구상·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대상지를 1곳을 선정하여 조성할 예정으로, 다수 지역에 구축(지정)할 수 있는 K-콘텐츠 통합 기반시설과 성격이 다르함.

참고1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제도 개요

□ 개요

- **(문화산업시설)**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 문화산업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7호(문화산업진흥시설의 정의) “문화산업진흥시설”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 **(시설 지정)**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문체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정 절차 및 요건

- **(절차)** 신청(지자체·법인 등) → 시·도지사 협의 → 지정(문체부장관)
- **(요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각호
 - *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10개 업체(서울시 20개)이상일 것, 중소기업비율 30/100 이상, 사업장 및 지원시설이 총면적의 50/100이상,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 지정 혜택

- **(의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의제(제21조 3항)
- **(면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제27조 2항)
- **(기타 지원)** 진흥시설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제21조 제1항),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시행령 제30조), 진흥시설의 집적화(제23조),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대부·사용 또는 매각 가능(제29조), 세제지원(제30조), 지자체 출연·출자(제30조의2) 등

□ 지정 현황

지역별	지정일	위치	면적
부천만화영상진흥원	'11.6.2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29-2	27,835m ²
문화콘텐츠센터	'07.3.12.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지구내 일대	43,609m ²
부천웹툰융합센터	'24.10.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702	19,771m ²

□ 관련 법조문

제21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을 문화산업진흥시설로 활용하게 하거나 그 건축물에 지원시설의 입주를 권장할 수 있다.

②정부는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②문화산업단지의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의 확충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세제지원 등) ①정부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단지, 제작자·투자회사·투자조합이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창업자 및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 설비 및 부품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려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부처명	의견 주요내용				
농림축산 식품부	□ K-콘텐츠 복합공간 조성 시 한식 관련 농식품부와 미리 협의할 필요 ○ 개정안에는 “K-콘텐츠”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이 없으나, 한국문화에서 우리의 식문화와 한식은 중요 * (제안 취지) K-콘텐츠 활성화 지원이 개별 시설이나 사업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시너지 창출에 한계 →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집적된 대규모 복합거점 조성하여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 ○ 개정법안과 「한식진흥법」 및 관련 사업의 중복·상충 발생 가능성 - 농식품부는 「한식진흥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사업으로 K-미식벨트 조성*,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추진 중 * K-미식벨트 조성 (목적) 특색 있는 미식관광 테마 발굴, 관광상품 고도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역 고용 창출, K-푸드 수출 활성화 지원 (내용) 한식관광상품 프로그램 기획·고도화, 수요자 대상 홍보 및 판매, 미식 해설사 신규 양성 및 보수 교육, 총괄 자문단 운영 (현황) 기 구축 벨트 4개(장, 전통주, 김치, 인삼), '32년까지 30개소 설치 목표 **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목적) 향토음식진흥센터 설립을 통한 한식원형 연구, 향토음식 자원화 및 고유성 보존 등 향토음식 기반 전후방 산업 육성 (내용)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기본 및 실시계획을 반영하여 최적의 전시·교육체험 공간 조성 및 구축 (현황) 전남 목포, 3년간('24:실시설계 '25:부지매입 건축공사, '26:건축공사) 105억원 (유사 입법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 당시 정부 내 합의 반영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한식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개 정 안</th><th>전북도 수정안</th></tr> </thead> <tbody> <tr> <td>제17조의2(K-콘텐츠 통합기반시설의 지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 거점의 K-콘텐츠 복합공간을 조</td><td>제17조의2(K-콘텐츠 통합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 거점의 K-콘텐츠 복합공간을</td></tr> </tbody> </table>	개 정 안	전북도 수정안	제17조의2(K-콘텐츠 통합기반시설의 지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 거점의 K-콘텐츠 복합공간을 조	제17조의2(K-콘텐츠 통합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 거점의 K-콘텐츠 복합공간을
개 정 안	전북도 수정안				
제17조의2(K-콘텐츠 통합기반시설의 지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 거점의 K-콘텐츠 복합공간을 조	제17조의2(K-콘텐츠 통합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 거점의 K-콘텐츠 복합공간을				

	성하기 위하여 공연장, 창작 스튜디오, 디지털 영상시설, 가상현실·증강현실 체험관 등을 포함하는 통합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조성하기 위하여 공연장, 창작 스튜디오, 디지털 영상시설, 가상현실·증강현실 체험관 등을 포함하는 통합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K-콘텐츠 복합공간을 조성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